

건축물 내 매립배관 관련 수수료 인상 최소화



벽면 매립형 가스배관 설치

(출처 : KNN News, 2013.2)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 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편집자주]

1.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건축물 내 배관매립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 산정 발표
- 검사수수료가 공사노임의 80% 이상 차지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협회는 건축물 내 배관매립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 산정방법 재검토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수료 개정 위한 협의

2. 추진결과

- 협회 건의안을 수용하여 매립배관 검사수수료 관련 민원 해소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수수료 개정 완료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 개정

세대수	개정전	개정후	금액차	할인(%)
1	28,000	12,000	16,000	57
150	4,200,000	1,800,000	2,400,000	57
151	4,228,000	1,809,000	2,419,000	57
300	8,400,000	3,150,000	5,250,000	63
301	8,428,000	3,156,000	5,272,000	63
500	14,000,000	4,350,000	9,650,000	69
501	14,028,000	4,353,000	9,675,000	69
1000	28,000,000	5,850,000	22,150,000	79
1500	42,000,000	7,350,000	34,650,000	83
2000	56,000,000	8,850,000	47,150,000	84
3000	84,000,000	11,850,000	72,150,000	86
4000	112,000,000	14,850,000	97,150,000	87
5000	140,000,000	17,850,000	122,150,000	87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2만9천원	2만5천원	
그 밖 의 시 설	월사용예정량이 1천m ³ 이하	6만원	2만9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m ³ 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m ³ 이하	6만원	4만4천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m ³ 초과	6만원에 4천m ³ 를 초과한 500m ³ 마다 8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4만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4천원에 4천m ³ 를 초과한 500m ³ 마다 8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배 관 매 립 시 설	단독주택	20세대미만	세대수×1만8천원	-
	공동주택	1세대~150세대	세대수×1만2천원	-
		151세대~300세대	$[150+(\text{세대수}-150)\times 0.75]\times 1\text{만}2\text{천원}$	-
		301세대~500세대	$[262.5+(\text{세대수}-300)\times 0.5]\times 1\text{만}2\text{천원}$	-
		501세대이상	$[362.5+(\text{세대수}-500)\times 0.25]\times 1\text{만}2\text{천원}$	-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5만2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복합공동배기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94,000원을 가산한다. 				